

미 품목관세 목재제품의 미국 HTSUS와 한국 HSK 비교 분석

[품목분류해설]

연질목재 및 제재목(10%), 목제가구류(25%) 등
관세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해설 (27p)

[이주의 초점]

고환율에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
"무역대금·수출신고액 편차 248조원" (4p)

[위클리뉴스]

관세 리스크, 사전에 막는다! 관세청 '안심 플랜' 출범
인천↔인도네시아 컨테이너선 직항항로 개설
해외 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7p)

[판례 동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분석 (20p)

[품목분류 동향]

위스키가 혼합된 기타 주류의 HS CODE (36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1월 19일(통권 제216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고환율에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
“무역대금·수출신고액 편차 248조원”

판례동향

- 20** 관세판례해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분석

07 Weekly News

품목분류동향

- 27**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⑤편 - 연질목재와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및 목제가구류 -

관세행정실무해설

- 12** 관세행정안내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제1211.20호)

- 36** 세번 바로잡기
위스키가 혼합된 기타 주류

- 18** 질의응답사례
수출신고 관련 서류 보관
-

고환율에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 "무역대금·수출신고액 편차 248조원"

수출대금 미회수, 가상자산·현물 대체수단 활용한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집중 조사

정부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비용 상승 압박에 직면했고, 수출기업 역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대대적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나섰다.

수출입 대금을 악용한 외화 유출과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가 환율 불안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1월 13일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무역·외환 범죄를 상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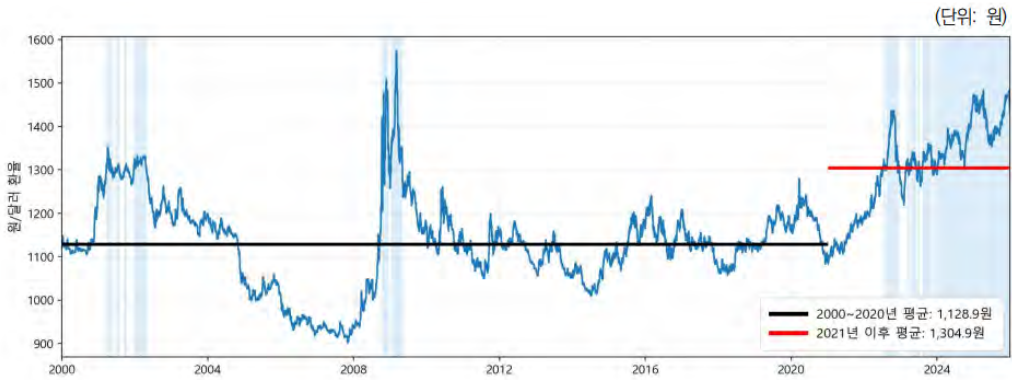
세종 재정경제부에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출처 : 관세청)

■ 무역업계 대상 외환검사 결과 조사업체 97%가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규모는 2조 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전체 외화 가운데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이른다. 그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 ●



음영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는 경우를 의미, 2000.1.4.부터 2025.12.31.까지 일별 증가 자료를 사용(자료 : 한국은행,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은행에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지난 5년간 최대 수준인 약 2,900억달러(한화 약 427조원)에 달했다. 11월 기준 수출 신고액과 무역대금 차이는 1,685억달러(한화 약 248조원)다. 무역거래 특성상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결제 시점과 수출입신고 시점의 차이로 일정한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이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외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



(출처 : 관세청)

■ 전국 세관 총동원…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가동

관세청은 13일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가동을 공식화했다. 관세청에 정보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두고,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을 하나로 묶어 각 세관의 외환검사와 수사경과를 모니터링해 통일된 기준 아래 신속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1,138개 기업이 관세청의 외환검사 대상에 올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수행하면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에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사이의 편차가 큰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62개는 대기업, 424개는 중견기업, 652개는 중소기업이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세관에 배분되며, 각 세관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도가 높은 기업부터 속도감 있게 검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기업은 즉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안정한 환율을 틈타 무역약용 재산 도피,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와 환율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관세청의 주요 단속 대상 ‘수출대금 미회수·변칙결제·재산 해외도피’

관세청이 겨냥한 집중단속 주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수출대금 미회수다. 수출로 발생한 외화채권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장기간 유보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다. 둘째는 변칙적 무역결제다.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 가상자산, 현물 대체수단 등을 활용해 외환거래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무역을 악용한 재산 해외도피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외화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방식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한 복합운송서비스업체는 해외지사 수출대금을 유보해 뒀다가, 다른 해외 거래처에 지급할 채무를 그 자금으로 변제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는 해외 게임 유저에게 홍보를 의뢰한 뒤 대가로 현금 등의 지급수단이 아닌, 업체의 PC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지급해 외환거래 신고를 회피했다. 그밖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무역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외환조사뿐 아니라 관세조사 과정에서도 신고납부세액과 더불어 외환거래 적법성 등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의 준수 여부에 대해 관세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해 조사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법한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위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사전에 막는다! 관세청 '안심 플랜' 출범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 안심 플랜'을 1월 12일 발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품목분류(HS), 과세가격, 원산지, 환급,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등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과 이에 따른 경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다. 우선,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 적용해 신속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 물품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세 안심 플랜 6대 개선 플랜	12대 세부 과제
플랜 1 : 품목분류 패스트트랙 확대 및 시제품 품목분류 활성화	① 품목분류 패스트트랙 확대 ② 시제품 등 품목분류 활성화
플랜 2 : ACVA 결정 업체에 대한 안정적 기업 경영 지원	③ ACVA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제외 ④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플랜 3 : AEO 기업의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지원	⑤ AEO 기업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활성화 ⑥ 통관적법성 심사기간 단축·서면심사 등 혜택 부여
플랜 4 :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⑦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자진신고 시 가산금액 경감 ⑧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기업에 대한 신속환급 지원 및 관세조사 간소화
플랜 5 :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정보제공 확대	⑨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을 통한 자율점검기간 연장 ⑩ 납세신고도움정보 정보제공 내용 확대
플랜 6 : 브랜드 홍보 강화 및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⑪ 관세 안심 플랜 통합 홍보 추진 ⑫ 성실신고·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받은 기업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AEO 기업은 자율검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세사·회계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통관적법성 심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도 확대된다.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자율 점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해 고액 추징이 일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FTA, 외국환거래, 해외 직구까지 관세행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주요 산업별 맞춤형 '품목분류 가이드북'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인천↔인도네시아 컨테이너선 직항항로 개설... 수도권 수출입 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기대

인천항만공사는 KCI(Korea-China-Indonesia) 컨테이너선 정기 서비스가 1월 13일부터 인천항에서 신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CI 서비스는 주 1항차 정기 서비스로, 인천·칭다오·상하이·자카르타·수라바야·서코우·부산·인천을 순환 기항한다. 이번 항로에는 2,200TEU급부터 2,954TEU급까지 총 4척의 컨테이너선이 순차 투입된다. 신규 서비스의 첫 항차로는 인터아시아 라인즈(Interasia Lines)의 'INTERASIA ENGAGE호(2,200TEU급)'가 13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에 입항했다.



출처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항로개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항 고지(waste paper), 폴리염화비닐(PVC) 등 수출화물과 중국 선전발 가구류 수입화물을 중심으로 연간 약 12만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구현 기자 |

해외 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해결과 해외 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 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 대조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부호 변경을 포함한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 외 사용자들은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에 따른 순차적 정보 변경 대상자에 포함돼 적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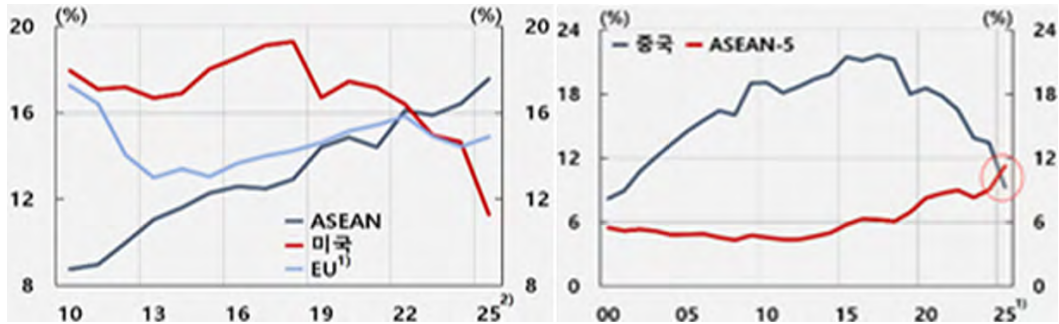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원활화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전쟁 무색” 중국 무역 ‘역대 최대’… ASEAN은 ‘중국 의존 심화’로 부담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미 교역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축을 빠르게 옮기며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ASEAN은 중국 대체시장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월 14일 2025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 4,7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했다. 무역 흑자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1,890억달러(약 1,757조원)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다. 교역국은 240개국에 달했고, 이 중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에 그쳤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EU 수출은 전년 대비 12%, ASEAN 수출은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EU로부터의 수입은 18% 늘었고,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5% 감소했다.

● 중국의 경제권역별 수출 비중(좌) & 미국 수입에서 중국과 ASEAN-5의 비중(우) ●



출처 : 한국은행

중국의 성장 이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은 ASEAN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중국의 아세안 수출 확대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됐으며, 미국 이외 지역으로 향한 중국 수출 증가분의 약 30%를 ASEAN이 흡수했다.

2025년 들어 ASEAN에서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대중국 무역불균형 심화, ▲물가 하방 압력 확대,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현지 기업의 경영 악화라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21~2024년 ASEAN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ASEAN 제품이 중국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대미 수출 시 중국보다 ASEAN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 이외 시장에서도 ASEAN은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확대와 중국산 중간재 활용을 통한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 같은 호조가 구조적 취약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들어 ASEAN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됐다.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대중 적자-대미 흑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은 "미·중 갈등 이후 ASEAN은 중국의 대체 생산거점으로 부상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국제 산업연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ASEAN 수출은 자국 부가가치 비중이 낮고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대미 수출 경로로 베트남 등 ASEAN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ASEAN은 수출 외형은 커졌지만, 부품과 중간재의 대중 의존, 소비재 수입 증가로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ASEAN 국가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성은 기자 |

대한상의·KOTRA, 중소·중견 기업 소비재 상품 해외진출 지원

K-소비재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품 정보를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월 14일 '상품 정보 활용 중소·중견기업 해외수출 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상의는 소비재 기업 및 상품 정보 DB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KOTRA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은 해외 바이어에게 국내 유망 상품을 추천할 경우 국내 여러 기업의 상품 정보 파악을 위해 검색과 문의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KOTRA는 이번 협약으로 K-소비재에 관한 기업별·상품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해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기술적 협의를 거쳐 올해 2월부터 K-소비재 상품 정보를 해외무역관에 제공할 계획으로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큰 상품의 생산·유통 업체들에게 해외 바이어 및 해외시장 매칭, 해외 유통망 입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 나 종 태(羅鐘太)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 양 승 혁(梁昇爨)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최 문 기(崔文箕)

서울세관 심사1국장 | 이 광 우(李光雨)

천안세관장 | 김 익 헌(金翼憲)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 백 광 환(白光煥)

김해공항세관장 | 이 소 면(李蘇勉)

인천세관 조사국장 | 김 재 철(金載哲)

포항세관장 | 반 재 현(潘在鉉)

관세청 | 김 용 철(金容澈)

관세청 | 조 한 진(趙漢珍)

관세청 법무담당관 | 장 진 덕(張鎭德)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박 천 정(朴天正)

김포공항세관장 | 김 희 리(金熺里)

서울세관 조사2국장 | 김 현 석(金炫錫)

부산세관 감시국장 | 문 흥 호(文興鎬)

부산세관 심사국장 | 이 훈 재(李暉宰)

경남남부세관장 | 김 헌 주(金憲柱)

수원세관장 | 정 재 호(鄭載鎬)

목포세관장 | 윤 재 성(尹宰晟)

관세청 | 방 대 성(房大聖)

관세청 | 석 창 휴(石昌休)

<2026년 1월 14일자>

관세청 | 지 성 근(池成根)

관세청 | 조 영 상(趙英商)

<2026년 1월 19일자>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1211.20호)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인도 CEPA
질문	<p>홍삼 태블릿(제1211.20-2220호)의 주원료인 홍삼(제1211.20-1319호)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제1108호인 경우 제1108호 또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p> <p>※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1211.20 -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p>
답변	<p>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p> <p>따라서, 홍삼 태블릿(제1211.20-2220호)의 재료 중 홍삼(제1211.20호)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 생산을 충족해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p>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은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을 의미한다.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는 상품을 말하며,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제3.15조에 따라 운송되고, ① 제3.3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 ②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품”이 되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상품은 한·인도 CEPA에 의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실무상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해당 협정에 존재하는 ②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PSR 내에서도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한·인도 CEPA의 제12류에 대한 PSR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한·인도 CEPA의 PSR

한·인도 CEPA는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서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거나 ②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및 역내부가가치 35% 이상(RVC 35%)일 것을 요구한다.

실무상 대부분 물품은 ②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나, 농축수산물 등 여러 제품은 ①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호의 완전생산기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의 검토도 필요하다. 협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제3.2조 가호(완전생산기준)의 의미 내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의 완전생산기준에서도 “완전하게 획득” 또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생산에 대한 충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3.3조의 규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성 생산품에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돼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의 PSR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16가지로 제1류(살아있는 동물)부터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까지를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농축수산물은 아니지만 제8482.20호부터 제8482.80호 및 제8482.99호의 경우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인삼제품류의 HS Code

인삼(人蔘)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이 주요 자생지다. 인삼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데, 말리지 않은 인삼은 수삼(水蔘),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리면 홍삼(紅蔘),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않고 말리면 백삼(白蔘)이라고 부른다.

HS Code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제1211.20호에 인삼이 분류된다.

다만, 인삼으로 조제된 물품인 경우 제13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38류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실제로 인삼 조제품은 농축액, 분말, 차, 캡슐, 음료, 스틱, 절편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될 수 있으며, 일부는 농축액을 통해 화장품 원료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인삼제품류의 HS Code 예시로 홍삼 추출물(extract)은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1302호 중 제1302.19-1210호에 분류될 수 있고, 홍삼차(Red ginseng tea)의 경우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호 중 제2106.90-3021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삼제품류가 본삼(Major roots)인 경우 제1211호에 분류 가능할 것이나 추가적인 가공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HS Code 판단을 위해 전문가에게 품목분류에 관해 문의하거나 바이어와의 HS Code 협의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홍삼 태블릿(제1211.20-2220호)의 주원료인 홍삼(제1211.20-1319호)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제1108호인 경우 제1108호 또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규정은 협정별로 그 범위(규정의 내용)를 달리 하고 있는데, ‘모든 사용 원재료’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인도 CEPA에 대해서는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당 규정은 해석 방식에 따라 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해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②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는 ③ 한·인도 CEPA의 PSR에는 특정 류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모든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협정 등을 비교해 보겠다.

(2) 답변 내용의 해석

한·인도 CEPA PSR 내에서의 완전생산기준은 대부분 제1류부터 제14류 물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타 협정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한·인도 CEPA의 완전생산기준은 단순히 완전획득 또는 생산 등으로 간단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호에서 쟁점이 되는 제12류의 PSR은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의 내용으로만 보면 제12류에 대해서만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세청에서도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되며, 홍삼 태블릿(제1211.20-2220호)의 재료 중 홍삼(제1211.20호)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해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인도 CEPA 다른 류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검토해 봐도 이에 대한 해석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1류 및 제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하면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정교하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1류의 PSR은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돼야 한다(ALL THE ANIMALS OF CHAPTER 1 SHALL BE WHOLLY OBTAINED)고 규정하며, 실제 발생할 수 없는 생산(Manufacture)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2류의 PSR에서는 “사용된 제1류 및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 AND 2 USED ARE WHOLLY OBTAIN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생산(Manufacture)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사용함은 물론 제1류에 대한 살아있는 동물 또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입해 보면, 제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제2류의 제품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규정은 제2류뿐 아니라 제1류에 대해서도 완전획득될 것을 규정하며, 한국산 육류가 수출되는 과정에서 제1류의 살아있는 동물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류부터 제14류까지의 완전생산기준은 각각 해당 류에 분류되는 모든 재료에 대해서만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들은 완전생산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타 협정 검토

한·인도 CEPA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자료를 추가 검토하겠다.

먼저 일본·인도 CEPA(Japan·India CEP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보면 한·인도 CEPA와의 차이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인도 CEPA의 PSR에서 제1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All the animals of Chapter 1 shall be wholly obtained”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제2류부터 시작되는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라고 규정하며 특정 류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모든 재료(all the materials)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와는 달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며, 특정 류뿐 아니라 모든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요구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인도 CEPA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와의 PSR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EU FTA의 제12류 원산지 결정기준 또한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이라고 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Defra EU Rules of Origin Business Guidance에서도 특정 류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류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됨을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002.90호에는 Chopped tomatoes(다진 토마토)가 분류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Production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7 used are wholly obtained(제7류의 모든 사용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인 경우 제7류의 모든 재료가 당사자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돼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Battered raw herring fillets, frozen(튀김옷을 입힌 손질된 냉동 청어 필레, 제1604.12-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Production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s 1, 2, 3 and 16 used are wholly obtained(제1류, 제2류, 제3류, 제16류의 모든 사용 재료는 완전 획득된 생산)”로 생산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어류(all fish)는 완전생산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부분 해석상 문제가 없으나, 일부 협정의 일부 HS Code에 관한 PSR은 그 해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문제는 대부분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 방향에 따라 사용 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쟁점이 있는 물품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및 관련 기관 문의를 거쳐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출 / 수출신고 관련 서류 보관

**수출신고 후 핸드캐리(Hand Carry)로 물품을 반출했다면
관련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서류보관 의무자, 보관방법, 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류보관 의무자[「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서류보관 방법[「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가. 수출신고필증
 - 나. 반송신고필증
 -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FTA / 인증수출자 협정 적용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관련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구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으나,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수입 당시 유효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입 이후 변경된 인증수출자 번호를 통보받았다면 협정관세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적용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FTA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요건 / 플라스틱 소재 수저통의 수입요건

제3924.10-0000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수저통의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제3924.10-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승인서]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컵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분석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1. 들어가며

조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서, 그 징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관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8항은 관세의 징수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납이 있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 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로 확정된다.

대부분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 특히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대표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기도 하나, 실제로는 조세채권의 실효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엄격한 요건과 법리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⑥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족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가 문제 되는데,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과세요건 사실이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돼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이른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과세물건·납세의무자)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세의 납세의무 또한 4가지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과세물건·납세의무자)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율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관세율표에 의거해 결정된다. 따라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 ●

구분	과세물건 확정시기
원칙	수입신고를 하는 때(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선박물품 등의 하역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장치물품 멸실·폐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구역 외 작업허가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 기간경과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구분	과세물건 확정시기
도난·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매각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또한 같은 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서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

구분	납세의무자	
원칙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	
연대 납세의무자	수입위탁 대행수입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위탁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수입신고 전 양도	양수인
	선박물품 등의 하역	하역허가를 받은 자
기타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받은 자
	장치물품 멸실·폐기	운영인·보관인
	보세구역 외 작업허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보세운송 기간경과	보세운송 신고·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	소비자·사용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해당 물품을 즉시반출한 자
	우편물	수취인
	법률의 준용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도난·분실물품	보세구역 운영인 등	
기타	소유자·점유자	

즉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과점주주’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같은 조 단서 규정에서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는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오해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실제로 부족액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사후적인 결과 확인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경우 객관적으로 조세채권의 부족이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작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경매절차의 구조, 선순위 채권의 존재, 이자 누적 가능성 등으로 봐 조세채권의 회수가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완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¹⁾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제도가 사후적 보전수단이 아니라, 조세채권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임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세채권 회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굳이 강제집행을 끝까지 집행한 이후에야 제2차 납세의무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보다 주식 소유 구조와 법률상 지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²⁾라고

1) 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

2)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판시했다.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점주주는 종종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명의를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부인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은 실제 경영 행위나 주주권 행사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족하며,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결국 제2차 납세의무는 ‘행위 책임’이 아니라 ‘지배 구조에 따른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구분된다. 대법원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것”³⁾이라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은 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고 체납처분을 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되고, ②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③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과점주주가 자주 오해하는 주요 쟁점 정리 ●

과점주주의 주장	법리상 판단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X 경영 관여 여부는 판단요소가 아님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X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족함
수입신고 이후 지분을 처분했다	X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아직 회사의 재산이 남아있다	X 현실적 강제집행의 완료를 요하지 않음 객관적 징수부족이 예상되면 충분
대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	X 대표자 여부와 무관, 과점주주면 해당

4. 맺음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자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가 아니라, 조세채권의 실효적 확보와 국고손실을 위한 사전적·보전적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법인의 체납 책임을 과점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조세채권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조세

3)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주된 납세자의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된 경우, 그 재산의 존재만으로 조세채권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통한 체납처분은 그 절차적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찰을 반복하면서 매각 가액이 단계적으로 저감되는 구조를 가진다.

법원경매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이해관계인 조사, 배당요구 종기 공고, 매각 기일 지정 등 다수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무상 최초 매각기일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유찰과 재매각이 반복되는 시간과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포함하면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받기까지 통상 1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경매는 단기간 내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⁴⁾.

더욱이 최근 법원경매 실무에서는 매각기일 내 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제사건 누적과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 대비 약 30% 수준으로 저감하는 운영이 일반화돼 있다. 이는 매각률 저하로 인한 경매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전국 법원이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감구조하에서는 유찰이 반복될수록 매각가액은 단계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선순위 채권자의 이자누적 등으로 조세채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된다.

이러한 경매절차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래의 매각 가능성만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지연한다면, 이는 오히려 조세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처분이 현실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만 이뤄져야 하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 징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조치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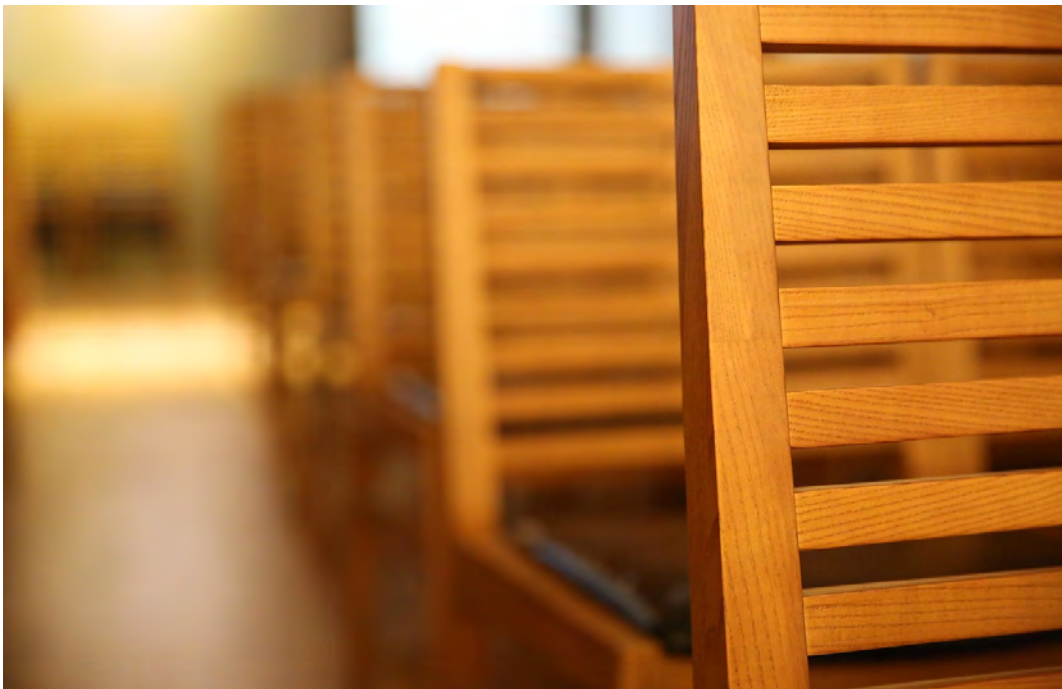
4) 기호일보, '부동산 경매는 왜 느리게 진행되나', 2024.4.2.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⑤편

- 연질목재와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및 목제가구류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개요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연질 목재 및 특정의 목제가구류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962, 이하 '포고문'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번 품목분류해설에서는 본지 제2139호(알루미늄·2025.7.21. 발행), 제2140호(철강·2025.7.28. 발행), 제2141호(자동차 및 부분품·2025.8.4. 발행), 제2145호(구리·2025.9.1. 발행)에 이어 특정의 목재 및 목제가구에 대한 품목별 관세 대상물품 상세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포고문에서 미국은 현재의 목재 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재 공장의 지속적인 폐쇄 위협과 목재 제품 공급망의 혼란이 발생하고 미국 내

목재 산업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목재 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정의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저해할 위험이 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이하 'HTSUS'라 한다) 8단위 및 10단위 기준으로 22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물품은 다음 3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연질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15개 품목 : 10%의 관세 부과
- ② 속을 덧댄 목재 의자 4개 품목 : 25%의 관세 부과(2026.1.1.부터 3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상 1년 연기)
- ③ 그 밖의 목제가구 및 부분품 3개 품목 : 25%의 관세 부과(2026.1.1.부터 5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상 1년 연기)

그러나 이 품목군에 부과되는 추가관세와 무관하게 영국(UK)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10%,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5%의 관세상한선을 적용받는다. 이는 2025년 5월 미국과 영국 간 체결된 '경제 번영 협약(Economic Prosperity Deal)' 등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목재 및 목제가구류의 HSK 코드 분석

□ 연질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3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00	- 침엽수류	4403.11-0000
<생략>			
4403.2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0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1-1000 4403.21-2000 4403.21-9000
4403.22	0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3.22-1000 4403.22-2000 4403.22-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3.23	01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1000 4403.23-2000
4403.24	01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3.24-1000 4403.24-2000
4403.25	01	- 기타(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1000 4403.25-2010 4403.25-2020 4403.25-2090 4403.25-4000 4403.25-5000 4403.25-9000
4403.26	01	- 기타	4403.26-1000 4403.26-2010 4403.26-2020 4403.26-2090 4403.26-4000 4403.26-5000 4403.26-9000
<생략>			
4403.9		기타	
<생략>			
4403.99	01	- 기타	4403.99-1010 4403.99-1020 4403.99-1040 4403.99-1050 4403.99-1090 4403.99-2000 4403.99-3030 4403.99-3040 4403.99-3060 4403.99-4000 4403.99-9000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1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00	- 침엽수류	4406.11-0000
<생략>			
4406.9		기타	
4406.91	00	- 침엽수류	4406.91-000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7.1		침엽수류	
4407.11	00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	4407.11-1010 4407.11-1020 4407.11-1090 4407.11-2000 4407.11-9000
4407.12	00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	4407.12-1000 4407.12-2010 4407.12-2020 4407.12-2090
4407.13	00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3-1000 4407.13-2000 4407.13-9000
4407.14	00	-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 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4-0000
4407.19	00	- 기타	4407.19-1000 4407.19-2010 4407.19-2020 4407.19-2090 4407.19-3000 4407.19-4000 4407.19-5000 4407.19-9000

일반적으로 제44류는 목재의 가공 또는 제조단계에 따라 4단위 호를 배열하고 동일한 4단위 호 내에서는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를 기준으로 6단위 소호 체계가 대분류된다.

영어표현으로 활엽수와 침엽수는 각각 ‘broad-leaf tree’와 ‘needle leaf tree’로 불리기도 하지만, 목재의 결이 일반적으로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활엽수를 ‘hardwood’, 침엽수를 ‘softwood’라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포고문 제목에서 말한 연질목재(softwood)는 바로 이 침엽수 목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HS 품목분류표에서는 침엽수를 ‘Coniferous’로 활엽수를 ‘기타(other)’로 구분한다. 그리고 일부 호에서는 활엽수를 다시 열대산 목재(tropical woods)와 기타(other)로 세분하기도 한다.

미국의 포고문은 제4403호(원목), 제4406호 및 제4407호에서 모든 침엽수 목재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서 6단위 소호 기준으로 침엽수 종류는 총 14개이며 이들 소호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3호에는 원목, 즉 벌채 상태의 통나무가 분류된다. 소호 제4403.1호에 해당하는 모든

침엽수종 원목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소호 제4403.2호의 열대산 원목은 수입조정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활엽수 중 소호 제4403.99호¹⁾에 분류되는 원목만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6호에는 철도나 궤도의 받침목(railway sleeper)이 분류되며, 이 중 침엽수로 만든 받침목이 분류되는 소호 제4406.11호와 제4406.91호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7호에는 보통 제4403호에 분류되는 원목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일정한 방향이나 길이 또는 두께로 절단한 간단한 형상의 목재재가 분류된다. 이중 침엽수에 해당하는 소호 제4407.1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 제4403호부터 제4407호에 해당하는 국내산 목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은 소호 제4407.19호(기타의 침엽수 제재목)뿐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조정 조치가 우리나라의 미국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속을 덧댄(upholstered) 목제 의자(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생략>				
9401.6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upholstered) -- 의자(chairs) ²⁾		
	20	--- 티크목의 것(of teak)		
	40	--- 기타		
	01	---- 어린이용 의자, 높이를 높인 것(highchair)을 포함한다		
	11	---- 그 밖의 가정용의 것(household)	ex	9401.61-1000
			ex	9401.61-9000
	31	---- 기타	ex	9401.61-1000
			ex	9401.61-9000
	60	-- 기타		
	01	--- 고정형 놀이대(stationary activity center)		

1) 제44류 해설서 부속서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엽수가 포함됨.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05	--- 그 밖의 어린이용 의자(seat)		
	11	--- 그 밖의 가정용의 것(household)	ex	9401.61-1000
			ex	9401.61-9000
	31	--- 기타	ex	9401.61-1000
			ex	9401.61-9000

HS 제9401호에는 제9402호의 의료용 또는 이발소용의 의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앉을 것이 분류된다. 이 중 소호 제9401.6호에는 항공기용, 차량용 의자, 회전의자, 침대 겸용 의자, 대나무와 등나무로 만든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자 중 프레임이 목재인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6단위 소호인 제9401.61호에는 이 중에서도 ‘upholstered’인 것만을 포함한다. 소호 제9401.61호 해설서는 ‘upholstered’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제9401호 해설서
[소호해설] 소호 제9401.61호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upholstered seat)’는 예를 들면, 솜뭉치·삼부스러기·동물의 털·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물·가죽·플라스틱 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씌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층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속을 대는 재료를 덮어씌우지 않았거나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하얀 직물로 만든 커버만을 갖춘 의자[‘무슬린 상태의(in muslin)’ 속을 댄 의자라고 한다]·앉은 부분이나 등을 대는 쿠션을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러한 쿠션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하는 의자와 속을 대기 위한 나선형의 스프링을 갖춘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분류한다. 한편, 수평으로 되게 움직여주는 인장스프링이 있고, 강선(steel wire)으로 만든 격자와 팽팽한 직물 등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으로 분류하는 의자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속을 대는 재료나 스프링과 같은 삽입물이 없이 식물·가죽·플라스틱제 쉬팅과 같은 재료로 직접 덮어씌운 의자와 한겹의 직물에 셀룰러 플라스틱의 얇은 층을 넣어 보강한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소호 제9401.61호에는 목재의 뼈대를 갖춘 기타의 의자로서 목재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목재 뼈대의 전부 또는 일부, 특히 앉거나 기대는 부분 혹은 팔을 걸치는 부분에 스프링이나 완충재를 채운 쿠션이나 지지물을 덧댄 형태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지지물은 가죽, 직물, 플라스틱 등의 외피로 이뤄진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내부에 속을 대는 재료를 보강하지 않고 단순히 가죽, 직물, 플라스틱 쉬팅(sheeting)을 붙인 정도의 것은 이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HSK에는 이 소호에 2개의 10단위 코드(제9401.61-1000호, 제9401.61-9000호)가 있으나 이 코드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2) HS 제9401호의 용어는 ‘seats … <후략>’이며, 국문 관세율표는 이를 ‘의자’로 번역하고 있다. 개념상 seat는 chair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문에서는 seat와 chair 모두 일반적으로 ‘의자’라 표현한다. 미국의 HTSUS는 seat의 범주 내에서 chair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즉, 제9401호에 포함되는 의자(seat)로서 chair인 것과 chair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포고문에서는 우선 티크(teak)목으로 만든 의자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티크가 생산되지 않으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티크목을 수입해 가구를 제조한 뒤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추가 관세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도 포고문에서는 어린이용의 것(chair와 그 밖의 seat)을 제외하고 있다. 즉, 소호 제9401.61호의 물품 중 티크목으로 만든 것과 어린이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 그림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그 프레임이 티크목이 아니라면 모두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전의자

침대 겸용 의자

속을 대지 않은 의자

어린이용 의자

□ 그 밖의 목제가구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생략>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0 00	- 벤트우드(Bent-wood) ³⁾ 가구		
		- 기타		
	60 00	-- 자동차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90	-- 기타		
	40	--- 식탁		
	60	--- 고정설치형 캐비닛	ex	9403.40-9000
	80	--- 기타		
<생략>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0 00	- 벤트우드(Bent-wood) 가구		
	80	- 기타		
	10	-- 어린이 보호용 놀이울 및 차단 울타리		
	40	-- 식탁		
		--- 기타		
	89	---- 티크목으로 만든 것		
	93	---- 기타	ex	9403.60-1000
			ex	9403.60-9010
			ex	9403.60-9020
			ex	9403.60-9030
			ex	9403.60-9090
9403.9		부분품		
9403.91	00	- 목재로 만든 것		
	05	-- 유아용 침대, 아기침대, 요람 및 흔들침대용 부분품		
	10	-- 어린이 보호용 놀이울 및 차단 울타리용 부분품		
	80	-- 기타	ex	9403.91-0000

제9403호에는 제9401호와 제9402호의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류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미국 포고문에서는 제9403.40호의 '주방용 목제가구'와 제9403.60호의 '그 밖의 목제 가구', 그리고 제9403.91호의 '목재로 만든 부분품' 중 HTSUS 기준으로 3개 코드만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목재를 깎거나 조각하는 대신, 열과 증기를 가해 구부려서 만든 가구를 말함.

첫 번째 수입조정 대상물품은 HTSUS 제9403.40-9060호의 ‘고정설치형 캐비닛(cabinets desig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이다. 제9403.40호의 주방용 가구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보통 주방(kitchen)에 위치한 싱크대나 수납장일 것이다. HTSUS의 용어상 고정설치형 캐비닛이란 주방용 싱크대의 상하부 수납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싱크대에는 상하부의 고정식 수납장과 하부 수납장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철강제의 수반(basin)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품목분류사례(NY A81342, 1996.4.11.)에서는 함께 제시된 싱크대 유닛에 대해 목제의 수납장은 제9403.40-9060호에, 철강제의 수반(basin) 부분은 제7324.10호에 각각 분류한 바 있다. 주방용 싱크대를 구성하는 모든 물품이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조정 대상인 두 번째 물품은 HTSUS 제9403.60-8093호의 ‘그 밖의 목제가구’인데, 여기에는 벤트우드(Bent-wood) 방식으로 만든 것, 티크목으로 만든 것, 어린이용 보호울타리, 식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소호 제9403.60호에는 사무실용, 침실용, 주방용을 제외한 모든 목제가구가 분류되므로 범위가 매우 넓고 적용되는 품목도 다양하다.

마지막 물품은 HTSUS 제9403.91-0080호의 ‘목재로 만든 그 밖의 부분품’이다. 여기에는 목재로 만든 가구 부분품 중 요람, 흔들침대, 놀이울, 보호울타리 등 어린이용 가구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이는 **대미 수출에서 목제의 가구 부분품 수출이 목제의 가구 완성품 수출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완제품 상태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품목의 부분품은 말할 것도 없고, 식탁, 침대, 책상 등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닌 물품의 부분품까지도 수입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조립 가구나 유닛형 가구 수출 시 제9403.9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위스키가 혼합된 기타 주류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위스키는 곡류(보리, 옥수수, 호밀 등)를 원료로 해 당화·발효·증류 과정을 거친 후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해 제조되는 대표적인 증류주다.

18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서 산골짜기마다 몰래 증류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세관원과 밀조업자 사이의 추격전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역에서는 위스키가 “겨울밤을 데우는 술”이 아니라 “세금을 피해 달아나는 술”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미국에서는 금주법(1920~1933년)이 위스키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술을 못 팔게 하자 오히려 몰래 거래되는 위스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진짜 위스키인지, 물 탄 위스키인지, 향만 넣은 가짜인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금도 위스키의 라벨과 원료, 숙성 기준을 까다롭게 정하는 이유에는 이런 시대 배경이 있다.

위스키는 겉으로는 모두 비슷한 갈색 술처럼 보이지만, 원료·증류 방식·숙성 여부 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때로는 위스키가 아닌 다른 범주의 주류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소주(alc 65%), 발아곡물 증류주, 카라멜 색소, 물 등을 혼합해 만든 투명 액상으로 위스키에 해당하는 제2208.30-9000호로 신고했다.

술의 품목분류는 국내 「주세법」을 참고한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에서 주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것
 -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것

위스키 제조에서 중요한 것은 위스키는 **발아된 곡물**을 **사용**해 발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아시키지 않은 곡물을 발효해 증류한 것은 위스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
 -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주류의 증류·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료를 첨가한 것

본 물품의 성분을 보면 쌀을 발효해 증류한 소주와 발아 맥아(malted malt)를 발효해 증류 후 나무통에 저장한 위스키를 혼합한 물품으로 「주세법」에서는 위스키가 아닌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s beverage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소주와 위스키가 혼합된 일반증류주로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BULK MALT SPIRIT	2208.30-9000 (FIN1 0%)	Other spirituous beverages	2208.90-9000 (C 30%)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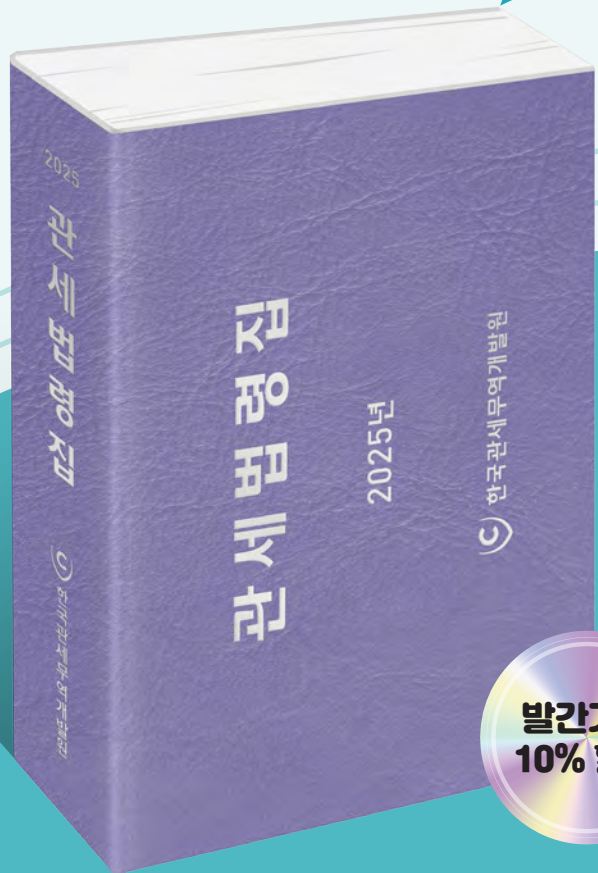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쿠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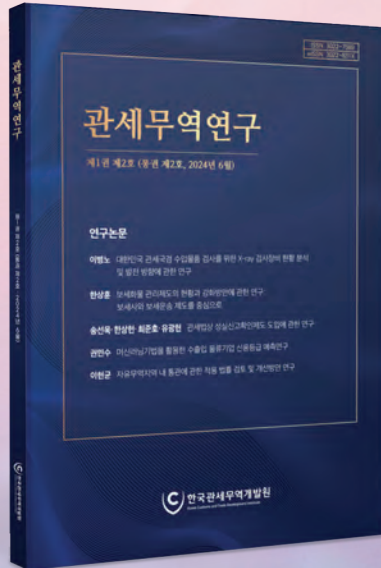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